

# 건축물명칭선정위원회규정

시행일 : 2015.05.08.

제 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“경희대학교 건축물명칭선정위원회”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 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경희대학교의 건축물 명칭 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며, 경희의 역사·정신·비전과 맥락을 같이하는 명칭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용어) ‘건축물’이란 경희의 이념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되는 건물, 조형물, 공간 일체를 뜻한다.

제 4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당연직 위원, 사안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각 캠퍼스 부총장으로 하고, 건축물 명칭 선정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.

③ 부위원장은 경희기록관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미래정책원장, 대외협력처장, 미래문명원장, 미래위원회 사무총장, 건설사업단장 등 5인으로 구성한다.

⑤ 사안별 위원은 명칭 선정 사안에 따라 해당 건축물 관계자 혹은 구성원 대표 중 5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⑥ 위원회 간사는 경희기록관 직원으로 하고, 건축물의 명칭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·연구하며,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.

제 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장, 부위원장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사안별 위원의 임기는 당해 명칭 선정 위원회 운영 기간으로 한다.

제 6조(주관부서)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는 경희기록관에서 담당한다.

제 7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명칭 신규 선정 및 변경 대상 건축물의 역사, 의미, 비전 연구·조사

2.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명칭 제안

3. 제안된 명칭을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

4. 명칭 선정의 전 과정을 합리적, 효과적으로 관리

제 8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, 당연직 위원과 사안별 위원으로 구성된 확대위원회를 각각 소집할 수 있다.

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난 명칭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전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제 9조(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된 회의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 10조(운영세칙)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11조(준용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